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(출근)금지 지침

감염병관리위원회 2021.02.26.(금)

	등교금지	등교가능일	한양인행동요령
본인	확진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/시설을 방문한 경우	"무증상"이면서 + 음성판정 또는 퇴소일 포함 8일째 ※ 학생생활관 입소자는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등교가능 ※ 진단검사, 자가 격리/능동감시 여부	* 치료센터 퇴소일 포함 7일 이내 등교하는 무증상자는 퇴소 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가능 * 학생생활관 입소자 중 치료센터 퇴소 시 양성판정(전파력 낮음)을 받은 경우 : 퇴소일 포함 8일째 이후 재검사하여 무증상 및 최종 음성판정 후 입소 가능 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격리 해제 후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 * 재난문자 또는 집단발생 지역/시설의 동선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, 즉시 등교중지 후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조치사항 문의 필수 - 국민재난안전포털-재난문자 확인 - 질병관리청-발생동향-확진자 이동경로
	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갑작스런 후각·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	(음성판정을 받더라도)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가능	*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거나, 질병관리청 콜센터 ☎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기
	자가격리/능동감시 대상자	격리/감시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	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 후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 받기
	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	자가격리/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음성판정 받은 후에 등교가능	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등교금지 필수,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자가격리/능동감시 대상자인지 보건소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
동거인 (가족 포함)	자가격리 대상자	동거인(가족 포함)이 격리 해제된 후	포털 문진표 체크 및 등교중지
	능동감시 대상자	동거인(가족 포함)이 음성판정 받은 후	포털 문진표 체크 및 등교중지
	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	동거인(가족 포함)이 음성판정 받은 후	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등교금지 필수 ※ 본인과 사무실, 연구실 등 동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검사 중인 경우 포함

- ※ 등교금지는 학교 출입 중단 뿐 아니라, 본교 구성원과의 만남(교외 포함)도 임시 중단함을 의미합니다.
- ※ 등교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포털 문진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**14일 이내 본교를 방문한 후**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**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**는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를 위해 행정팀 또는 한양보건센터(☎ 02-2220-1466~7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위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의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[지자체용] 제9-5판, 2021.01.22.」에 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본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 것이오니,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확진자 및 자가격리/능동감시 대상자 등교 세부지침

감염병관리위원회 2021.02.26.(금)

- 1. 국가 지정 치료시설(생활치료센터 포함)에서 퇴소한 뒤에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
 - 1) 퇴소 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: 등교 허용
 - 2) 퇴소 시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: 퇴소일 포함 8일째 등교 가능
 - ※ 입국 후 14일 미경과자의 경우, 자택에서 남은 자가격리 기간을 채운 뒤 위 사항 적용
- 2. 국가 지정 치료시설(생활치료센터 포함)에서 퇴소한 뒤에 생활관에 입소하는 경우
 - 1) 퇴소 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: 입소 및 등교 허용
 - 2) 퇴소 시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: 최종 "음성판정" 후 입소 가능
 - 퇴소일 포함 7일 동안 등교 불가(자택 거주)하며, 거주지가 없는 경우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가격리
 - 무증상이고 8일째 이후 임시선별진료소(무료)에서 재검사하여 최종 "음성판정" 받은 후 입소
 - ※ 입국 후 14일 미경과자의 경우, 자택에서 남은 자가격리 기간을 채운 뒤 위 사항 적용
- 3. <자가격리/능동감시 대상자>의 경우 해제 전 검사에서 "음성" 판정 후 등교 가능
 -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: 해제 직후 임시선별진료소(무료)에서 재검사하여 최종 "음성판정" 받은 후 등교 가능
- * 위의 내용은 "무증상"인 경우에 해당하며, 증상이 있는 경우는 위의 내용을 충족하면서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가능함
- *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필수 안내